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10. 23.(금) 총 9매(본문3, 참고6)	
국토 교통부	건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김종욱, 주무관 김민태 • ☎ (044) 201-4597, 4962
보 도 일 시		2020년 10월 2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5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·지원

### -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·전방위 지원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 및 국내·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.
  -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‘작지만 강한’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3주간(10.26 ~ 11.15)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「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.
  - 「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」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, 산업계, 공공발주기관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.



□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계획은 다음과 같다.

- (선정분야) 100대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·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. 또한, ①기술개발(30%), ②시장진출(60%), ③기술개발·시장진출(10%)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

\* 단, 선발 비율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유동적으로 조정

- (선정대상)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,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 또한,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,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부도·희생·워크아웃 등 부실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각 부문별로 ①시장진출(국내)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 능력,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. 또한, ②시장진출(해외)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·구체성을 중심으로, ③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·선정한다.

□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(공통지원)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('20.8~9월, 국토연구원)하였으며, 이를 기초로 보증 부담완화(수수료 10%↓), 저리자금 대출 확대(20%↑)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.

○ (분야별지원) 또한,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.

- ①시장진출(국내)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(3점), 고용평가 가점(0.5점), 인증제(KISCON 기업정보 공개)\* 등을 통해 지원하고,

\*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·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·인증마크를 부여

- ②시장진출(해외) 분야는 타당성·사업성 분석(KIND)\* 및 시장개척 지원(해외건설협회) 그리고 컨설팅(해외건설협회·로펌) 등을 지원한다.

\* 해외시장 진출시 사업의 현지사정상 적합 여부, 수익창출 가능성 등 검토

-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'스마트 건설지원센터'\* 입주지원('21년 말),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'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\*\*'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.

\* 기술 혁신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 기술을 개발·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

\*\*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,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

□ 100대 기업 선정계획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(www.krihs.re.kr), 대한건설협회(www.cak.or.kr), 대한전문건설협회(www.kosca.or.kr)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종욱 사무관(☎ 044-201-45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지원 분야

🌐 국내·외 시장진출 지원

🔧 기술개발 지원

지원 내용

- 공 통** 기업진단·방향설정, 전문성 향상 교육, 공제수수료 할인, 저리자금 대출
- 분야별**
- ▶ **시장진출** ① 국내: 상호협력평가·고용평가 가점, 공공발주기관과의 협력육성 프로그램 지원, 지자체와 협력 지원
  - ② 해외: 사업타당성 분석·항상지원, 전문분야 컨설팅, 발주처 네트워킹 지원
  - ▶ **기술개발** 공간지원, 전문 연구기관의 매칭지원, 수요처 확보 지원

선정 기준

- 선정대상** 매출실적, 기술인력 고용, 미래 투자계획 등을 고려
- 제외대상** 수주실적, 불공정, 부도 등을 고려

제출 서류

- ▶ 사업계획서
- ▶ 매출실적표, 고용보험가입증명서, 회사채 등급표, 공제조합신용도 등

제출처 및 문의

- 제출처** 국토연구원 김나영 연구원(nayeongkim@krihs.re.kr)
- 문의**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(cjlee@krihs.re.kr)
- ▶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국토연구원, 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의 홈페이지 참조
  - 국토연구원 <http://www.krihs.re.kr/> - 대한건설협회 <http://www.cak.or.kr/>
  - 대한전문건설협회 <http://www.kosca.or.kr/>

## 참고 2

##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주요 지원내용

### ① 공통 지원 사항

- (기업진단·방향설정 컨설팅) 건설공제조합·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경영·사업·투자 관련 혁신 컨설팅 지원

공제 조합	① 경영관리	• 노무(Ⅰ·Ⅱ), 채용인사, 재무, 회계, 세무
	② 사업관리	• 공사관리(Ⅰ·Ⅱ), 하자대응, 계약관리, 하도급관리, 안전관리
	③ 투자관리	• 기술개발, 자산운용, 사업성분석
협회	경영관리	• 법무, 세무, 노무

- (종사자 교육)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안전·혁신 교육을 신설·지원(21년 12억), 전문건설협회도 윤리·하도급·안전교육 등 지원 계획
- (보증부담 완화) 계약·공사이행·하도급대금지급 등 보증 가입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\*를 추가로 10% 인하(총 20%)하여 부담 완화
- (저리자금) 공제조합에 가입한 100대 선정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자금 대출한도(평균 대출 약 2.8억원)를 확대(100→120%)

### ② 시장진출 지원 : ① 국내

- (상호협력평가 가점) 100대 기업과 공동도급을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맺은 종합건설기업에게 가점을 부여(3점)하여 시장진출 간접 지원
- (고용평가 가점)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고용평가 수행시 가점(0.5점) 부여
- (협력육성) 국토교통부 산하기관(LH)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육성 프로그램 지원(적용기관 점차 확대 계획)
- (인증제)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·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·인증마크를 부여(KISCON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)
- (지자체 협업)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역 중소기업이 등록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 시 100대 기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협업 강화

### ③ 시장진출 지원 : ② 해외

- (사업개발) 타당성·사업성 사전 검토(KIND), 전문가 상담(KIND, 해외건설협회)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(해외건설협회) 지원
- (컨설팅) 중소기업이 진출 대상 국가의 제도·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을 맞춤형 지원
  - \* 계약·클레임, 법률, 보증·보험·환율, 공종별 기술, 영문번역 작성지원 등
- (네트워크)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GICC\*(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) 우선 참석권을 부여하고, 참가비도 면제
  - \*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, 다자개발은행, 건설·엔지니어링 기업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('13년~)

### ④ 기술개발 지원

- (창업플랫폼) 「스마트건설지원센터('21년 말 입주)」, 아이디어 구현·실증 지원, 기술 멘토링,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지원
- (기술개발·제공) 기술개발·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전문 연구기관(전기연)과 매칭하여 지원 강화
  - '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'\* 선정 시 100대 기업에 가점 부여
  - \* (지원내용)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,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
- (수요처 확보 지원)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원활히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
  - \* '기업성장지원위원회'(20.11월 발족) 건설분과에서 우수 신기술로 선정도록 지원

### 참고 3

##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 세부기준

### (1) 공통적용 기준

- (선정 대상) 매출실적, 기술인력 고용, 미래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선정
  - (매출실적) 평가년도 이전 3개년간 매출실적이 지속 증가한 기업
  - (기술인력 고용) 평가년도 이전 3개년간 전체인력 대비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한 기업
  - (미래투자) 보증부담 완화, 저리 자금대출 지원에 따른 회사부담 감소 부분을 미래 투자(신기술개발, 추가 고용, 교육 등)로 연계하는 기업
- (제외 대상) 수주실적·불공정·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
  - (수주실적) 평가년도 직전 3년 중, 2년 이상 연속 실적이 없는 경우 (단, 3년 미만 기업인 중소건설기업은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)
  - (불공정 등) 최근 3년간 불공정·사망사고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
  - (부도 등) 부도·회생·워크아웃·업무거래 정지, 휴·폐업, 부채비율 1,000% 이상,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
### (2) 시장진출 기준: ① 국내

-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시공능력(40점)은 종합건설, 공사관리능력(20점,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낮게 부여)은 전문건설에만 차등 적용

구분(100)	종합건설	전문건설	세부사항
직접시공	4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3년간 수주한 공사에서 직접 시공한 비율(20)</li> <li>• 직원 수 대비 고용예정인 기능인력 수 비율(20)</li> </ul>
공사관리	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규모 복합공사 등에서 공사관리 경험·계획(10)</li> <li>• 공사관리 기술인력의 고용규모·계획(10)</li> </ul>
일자리 창출	40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규직 수 비율(15)</li> <li>• 만29세미만 인력 비율(10)</li> <li>• 업종평균 대비 교육훈련비 수준(10)</li> <li>•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(5)</li> </ul>
지원 필요성	20 (각 5)	40 (각 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장전략 타당성</li> <li>• 시장확보가능성</li> <li>• 사업어려움 해소가능성</li> <li>• 경영개선 노력</li> </ul>

### [3] 시장진출 기준: ②해외

- 일부 중소기업만 해외시장에 진출(1.7%)하고 있어 해외진출 경험·실적(5~10점)보다 진출계획의 타당성·구체성(20~30점) 중심으로 평가

구분(100)	세부사항	새싹기업 (스타트업)	스케일업
해외진출 계획(50)	• 해외진출 사업의 실적	5	10
	•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30	20
	• 3년 이상의 해외현장 경력직원 보유현황	5	10
	• 회사채등급, 공제조합 평가 신용도	10	10
일자리 창출(40)	• 전체 고용인력 대비 정규직 수	15	15
	• 전체 고용인력 대비 만29세미만 인력의 비율	10	10
	• 업종평균 대비 교육훈련비 수준·계획	10	10
	•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·계획	5	5
지원 필요성(10)	• 지원을 통한 성장전략의 타당성	5	5
	• 진출 분야의 시장규모·시장점유율 확보가능성	5	5

### [4] 기술개발 기준

- 기술개발 분야는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·전문건설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기술성(40점)·사업성(40점)을 중심으로 평가·선정

구분(100)	세부사항	새싹기업 (스타트업)	스케일업
기술성(40)	•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	10	10
	• 개발기술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	20	15
	• 기술개발 실적	10	15
사업성(40)	• 경제적 효과분석의 타당성	5	5
	• 개발기술 사업화의 실적	10	15
	•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·타당성	25	20
일자리 창출(14)	• 기술개발단계에서의 고용계획	7	7
	• 사업화시, 신규고용 및 유지계획	7	7
정책 일관성(6)	• 10대 중점육성기술과 연관성	3	3
	•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술(건설안전·뉴딜기술)	3	3

## 참고 4

#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위원회(가칭) 운영방안

### □ 개요

- 중소건설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(미래투자, 기술인력 고용, 매출 실적 등 고려)을 보유한 100개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별

### □ 구성 및 운영

- (구성) 국토교통부(건설국장), 산업계(건설·전문건설협회), 공공발주기관(LH·도로공사 등), 연구기관(건설연, 건설연)
  - 선정시, 건설 관련 교수 등 초빙전문가도 참여시켜 평가 수행



- (운영) 국토연구원(사무국)이 사업공고·접수 업무를 수행하며, 기업 평가·확인 은 선정위원회·초빙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



### □ 향후 계획

-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 공고(10월 말, 3주 간)
- 선정위원회 평가(11월 중), 선도기업 확정·발표(11월 말)